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15

발의연월일: 2020. 8. 5.

발 의 자:서동용・인재근・고영인

최인호 · 양정숙 · 유정주

이동주 · 김정호 · 박영순

강민정 • 윤재갑 의원

(11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우선 분양전환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,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,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우선 분양전환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우선 분양전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,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, 제3자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로 매각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여,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3 등).

##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3의 제목 중 "분양전환"을 "분양전환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"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,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"를 "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에게 우선 분양전환(이하 "우선 분양전환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분양전환"을 "우선 분양전환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.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 중 "임차인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"을 "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"분양전환가격 산정을

위한 감정평가는"을 "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은"으로, "대통령령"을 "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하고, 해당 감정평가는 대통령령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 주한 무주택자
- 2.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: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
- 3.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 받은 경우: 양도일부터 분 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
- 4.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: 입주 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 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 고 있는 자
- 5.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의 경우: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
-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,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.

-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1.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 는 경우
- 2.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대하여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하지 아니한 경우
-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.

제5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5(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)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 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에 관하여는 「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3조제3항·제4항 및 제67조제4항제2호의2 를 준용한다.

제57조의3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한 자

- 4.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게 우선 분양전환 전환하지 아니한 자
- 5.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또는 매각 가격으로 우선 분양전환 또는 매각을 하지 아니한 자
- 제6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7.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

#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0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50 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57조의3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하는 경우 부터 각각 적용한다.
  - ② 제50조의3제5항 및 제6항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공주택 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하거나 매각을 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.
- 제3조(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) ① 제50조의5의 개정
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이 경우 "공공주택사업자"는 "임대사업자"로 본다. 제4조(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)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, 제57조의3제3호 및 제6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보는 주택에 대하여 우선 분양전환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이 경우 "공공주택사업자"는 "임대사업자"로 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50조의3(공공임대주택의 우선 제50조의3(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) ① 공공주택사업자 분양전환 등) ① -----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 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 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 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, ----시점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대 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분양전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. 이 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·절차 등 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에게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우선 분양전환(이하 "우선 분양 령령으로 정한다. 전환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 -------우선 분양전환-----<신 설> 1.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하여 거주한 무주택자 <신 설> 2.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 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 우: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 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

- 3.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 권을 양도 받은 경우: 양도일 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
- 4.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
  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: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자
- 5.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임대주택의 경우: 분양 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
-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 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, 임차인은 우선 분 양전환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

<신 설>

②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 <u>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</u> <u>감정평가는</u>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 계약을 하여야 한다.

- ③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렁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-----

\_\_\_\_\_

-----.

- 1.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

  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

   아니하는 경우
- 2.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
  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
  환에 대하여 통보한 날부터 6
  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
 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
  경우
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감정평가법 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. 다만,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 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 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 인(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 다)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하고, 해
당 감정평가는 대통령령
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
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
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
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
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
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
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
<u>산정할 수 있다.</u>
<u> </u>
신고)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
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

제57조의3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신 설>

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
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
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
에 관하여는 「민간임대주택에
관한 특별법」 제43조제3항·제
4항 및 제67조제4항제2호의2를
<u> 준용한다.</u>
제57조의3(벌칙)
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
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
아니하는 자에게 공공건설임
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한 자
4.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
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게 우
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자
5.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우선
분양전환 가격 또는 매각 가
격으로 우선 분양전환 또는
매각을 하지 아니한 자

부과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.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
	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
	아니한 자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